
Policy and Law Report _Vol.18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5.15.~5.21.) -

May 22, 202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5. 지난 주(5/15~5/21)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수출 유망품목 30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등 수출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함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 제조업 및 12대 신수출 유망분야 중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세부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수출 지원계획을 논의함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거점무역관 지정,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사업 등과 연계하는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부지원을 확대할 예정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23년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수출 유망품목 30개 집중 지원 - (단기) 세부유망품목에 대한 무역금융 ·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수출애로 신속해소 등 수출지원 강화 - (중장기) 수출 유망품목 지정제도 신설 및 수출지원사업 확대 등 유망품목 수출기업 해외진출 밀착지원	2023-05-16																				
	【 수출유망 세부품목 】 <table> <tr> <th>구 분</th><th>유망 품목</th><th>고려 사항</th></tr> <tr> <td rowspan="3">주력 제조업 17개</td><td>호조품목 (5개) 전기차, 양극재, 항공유, 히트펌프(기계), 바이오시밀러</td><td>▶ 금년에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수출증가율 유지 ▶ 향후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td></tr> <tr> <td>지속성장 품목 (8개) 고성능 메모리반도체(HBM), 투명OLED, 아라미드(섬유), 바이오 플라스틱, LNG선, 탄소섬유, 아연도강판, 원전2차재</td><td>▶ 디지털 전환(DX), 친환경 전환(GX) 등과 밀접 관련 ▶ 글로벌 시장의 지속적 성장세 기대</td></tr> <tr> <td>기회품목 (4개) 굴착기, 트랙터, 블랙박스, 전기오븐·인덕션</td><td>▶ 인프라 투자, 공급망 교란, 정책변화 등의 변수(event)에 따라 특정시장 중심으로 단기적 수출증가 기대</td></tr> <tr> <td rowspan="6">신수출 유망분야 13개</td><td>농식품부 (3개) 라면, 배, 스마트팜</td><td>▶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산 농식품 수요 증가 ▶ 우리나라 ICT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팜 관심 증가</td></tr> <tr> <td>해수부 (4개) 김, 굴, 넙치, 전복</td><td>▶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되는 한국산 수산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td></tr> <tr> <td>복지부 (1개) 화장품</td><td>▶ 세계적 수준의 생산 경쟁력 및 한류 연계 확장성 보유</td></tr> <tr> <td>문체부 (2개) 게임, 음악</td><td>▶ 연평균 10% 이상의 수출 증가율, 중국 외 북미·유럽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가능성</td></tr> <tr> <td rowspan="2">과기정통부 (3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OTT</td><td>▶ 연 25% 이상 높은 성장 예상 글로벌 빅테크 기업 투자 확대</td></tr> <tr> <td>▶ 해외(연평균 18.8%) · 국내(연평균 8.5%) 시장 급성장 전망 ▶ 아시아·남미시장 중심으로 20% 이상 성장 전망</td></tr> </table>		구 분	유망 품목	고려 사항	주력 제조업 17개	호조품목 (5개) 전기차, 양극재, 항공유, 히트펌프(기계), 바이오시밀러	▶ 금년에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수출증가율 유지 ▶ 향후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지속성장 품목 (8개) 고성능 메모리반도체(HBM), 투명OLED, 아라미드(섬유), 바이오 플라스틱, LNG선, 탄소섬유, 아연도강판, 원전2차재	▶ 디지털 전환(DX), 친환경 전환(GX) 등과 밀접 관련 ▶ 글로벌 시장의 지속적 성장세 기대	기회품목 (4개) 굴착기, 트랙터, 블랙박스, 전기오븐·인덕션	▶ 인프라 투자, 공급망 교란, 정책변화 등의 변수(event)에 따라 특정시장 중심으로 단기적 수출증가 기대	신수출 유망분야 13개	농식품부 (3개) 라면, 배, 스마트팜	▶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산 농식품 수요 증가 ▶ 우리나라 ICT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팜 관심 증가	해수부 (4개) 김, 굴, 넙치, 전복	▶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되는 한국산 수산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복지부 (1개) 화장품	▶ 세계적 수준의 생산 경쟁력 및 한류 연계 확장성 보유	문체부 (2개) 게임, 음악	▶ 연평균 10% 이상의 수출 증가율, 중국 외 북미·유럽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가능성	과기정통부 (3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OTT
구 분	유망 품목	고려 사항																				
주력 제조업 17개	호조품목 (5개) 전기차, 양극재, 항공유, 히트펌프(기계), 바이오시밀러	▶ 금년에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수출증가율 유지 ▶ 향후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지속성장 품목 (8개) 고성능 메모리반도체(HBM), 투명OLED, 아라미드(섬유), 바이오 플라스틱, LNG선, 탄소섬유, 아연도강판, 원전2차재	▶ 디지털 전환(DX), 친환경 전환(GX) 등과 밀접 관련 ▶ 글로벌 시장의 지속적 성장세 기대																				
	기회품목 (4개) 굴착기, 트랙터, 블랙박스, 전기오븐·인덕션	▶ 인프라 투자, 공급망 교란, 정책변화 등의 변수(event)에 따라 특정시장 중심으로 단기적 수출증가 기대																				
신수출 유망분야 13개	농식품부 (3개) 라면, 배, 스마트팜	▶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산 농식품 수요 증가 ▶ 우리나라 ICT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팜 관심 증가																				
	해수부 (4개) 김, 굴, 넙치, 전복	▶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되는 한국산 수산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복지부 (1개) 화장품	▶ 세계적 수준의 생산 경쟁력 및 한류 연계 확장성 보유																				
	문체부 (2개) 게임, 음악	▶ 연평균 10% 이상의 수출 증가율, 중국 외 북미·유럽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가능성																				
	과기정통부 (3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OTT	▶ 연 25% 이상 높은 성장 예상 글로벌 빅테크 기업 투자 확대																				
		▶ 해외(연평균 18.8%) · 국내(연평균 8.5%) 시장 급성장 전망 ▶ 아시아·남미시장 중심으로 20% 이상 성장 전망																				

부처	내용	일시																
	② 중국 경제활동 재개효과 활용 등을 위한 對中 수출확대 지원방안 마련 - (新성장제조업) 中 시장 변화에 맞춘 전기차,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新성장 제조업 수출 확대 - (소비재) 중국 내 최근 소비 트렌드를 활용한 수출 확대 - (디지털化·그린化) 中 정부 정책(DX, GX)과 연계한 협력 확대 ③ 재생에너지 산업 수출활성화 방안, 해외인증 종합지원 방안 등 논의																	
해양수산부	• 국제 수출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물류분야 8개 개선과제 발표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방안」을 마련함 이번 개선안은 수출입 활동의 기·종점인 항만에서 항만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항만 이용편의를 증진하여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항만물류 프로세스 3개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됨 < 세부 개선과제 > <table><tr><th colspan="2">✓ 항만관련계획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불일치 해소 (산업부, 해수부)</th></tr><tr><td>현행</td><td>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상이한 항만개발계획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을 선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항만개발사업 지연 및 행정 비효율 발생</td></tr><tr><td>개선</td><td>「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상 경미한 사항의 범위 확대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업무의 위임범위 확대로 항만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23.7월~) -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상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 -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장)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고도 개발계획 변경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td></tr><tr><td>효과</td><td>민간투자 촉진 및 원활한 항만개발·운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td></tr></table> <table><tr><th colspan="2">✓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시설 확대 (해수부)</th></tr><tr><td>현행</td><td>항만구역 내 수소·암모니아 인수·저장시설,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제조시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관련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항만법상 근거조문 명문화 필요</td></tr><tr><td>개선</td><td>항만법상 반영이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인수, 저장, 보관, 유통시설 등에 대한 수요 확인 후 법령개정 추진 ('23.하반기~)</td></tr><tr><td>효과</td><td>항만 내 친환경 에너지 시설 도입 확대</td></tr></table>	✓ 항만관련계획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불일치 해소 (산업부, 해수부)		현행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상이한 항만개발계획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을 선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항만개발사업 지연 및 행정 비효율 발생	개선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상 경미한 사항의 범위 확대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업무의 위임범위 확대로 항만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23.7월~) -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상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 -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장)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고도 개발계획 변경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효과	민간투자 촉진 및 원활한 항만개발·운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시설 확대 (해수부)		현행	항만구역 내 수소·암모니아 인수·저장시설,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제조시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관련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항만법상 근거조문 명문화 필요	개선	항만법상 반영이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인수, 저장, 보관, 유통시설 등에 대한 수요 확인 후 법령개정 추진 ('23.하반기~)	효과	항만 내 친환경 에너지 시설 도입 확대	2023-05-15
✓ 항만관련계획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불일치 해소 (산업부, 해수부)																		
현행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상이한 항만개발계획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을 선행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항만개발사업 지연 및 행정 비효율 발생																	
개선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상 경미한 사항의 범위 확대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업무의 위임범위 확대로 항만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23.7월~) -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상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 확대 - 시·도지사(경제자유구역청장)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고도 개발계획 변경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효과	민간투자 촉진 및 원활한 항만개발·운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기대																	
✓ 항만구역 내 친환경 에너지 관련시설 확대 (해수부)																		
현행	항만구역 내 수소·암모니아 인수·저장시설,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제조시설,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관련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항만법상 근거조문 명문화 필요																	
개선	항만법상 반영이 필요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인수, 저장, 보관, 유통시설 등에 대한 수요 확인 후 법령개정 추진 ('23.하반기~)																	
효과	항만 내 친환경 에너지 시설 도입 확대																	

부처	내용	일시																														
	✓ 항만물류데이터 활용 확대로 정책신뢰성 제고 (해수부, 관세청) <table><tr><td>현행</td><td>해수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관계 국책 기관에서 일부분에만 활용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통관 관련 데이터도 일부 접근에 한계</td></tr><tr><td>개선</td><td>데이터를 국제 물류에 대한 분석·예측·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물류관련 대학, 관련 벤처기업·빅데이터 분석기관 등에 공유 ('23.3월 시행)</td></tr><tr><td>효과</td><td>정책 수립의 정확성 제고 및 예측 가능한 유용 정보의 제공</td></tr></table> ✓ 입출항 신고자료 입력방법 개선 (해수부, 법무부, 관세청) <table><tr><td>현행</td><td>선박 입출항시 제출하는 신고서류 입력 간소화로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항만 경쟁력 강화</td></tr><tr><td>개선</td><td>① 첨단 AI 활용 광학문서인식기술을 선박 탑승자 정보 입력업무에 도입 ('23.12월) ② 해운대리점에 '품목코드 자동기재(추천) 서비스'를 제공, 선사에는 '코드 검증 API'를 제공 ('23.6월)</td></tr><tr><td>효과</td><td>신고제출[정보입력] 노력시간 절약으로 항만 및 수출입 경쟁력 강화 기여</td></tr></table> ✓ 인접항만 입출항 절차 간소화 (법무부, 관세청) <table><tr><td>현행</td><td>여수·광양항 등 인접 항만의 경우 항만사정에 의해 접안 하역하다 항계밖 정박지에 정박 후 재입항시 세관과 출입국관리소는 다시 입출항신고를 해야하는 불편</td></tr><tr><td>개선</td><td>세관과 출입국관리소의 입출항 중복 신고 간소화 ① 관세청 내부규정 정비 시행 ('23.2월 시행) ② 법무부 내부규정 정비 시행 ('23.3월 시행)</td></tr><tr><td>효과</td><td>항만입출항 편의개선을 통한 불편해소 및 항만 경쟁력 강화 기여</td></tr></table> ✓ 항로와 정박지 유지준설 체계 개선 (해수부) <table><tr><td>현행</td><td>항로 개설시 계획수심이 확보되었으나 서해안의 특성상 일부 해역에서 계획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선박 입출항에 지장 초래</td></tr><tr><td>개선</td><td>① 비관리청 준설공사허가기간 단축(「항만법」제9조 개정, 20→14일) ('23.6월~) ②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주요 항로와 정박지 수심에 대한 정기적 기록 관리, 항만이용자 의견수렴 등) ('23.4월~) ③ 선박의 안전한 통항 수심 확보를 위해 적기 준설예산 확보 ('23.12월)</td></tr><tr><td>효과</td><td>대형선박의 항행 원활화로 수출입 물류비 감축</td></tr></table> ✓ 검수업 등록기준 합리화 (해수부) <table><tr><td>현행</td><td>검수업 등록기준이 항만 급지별로 차등을 두고 있으나 취급 물량 등 여건에 맞지 않는 상황</td></tr><tr><td>개선</td><td>항만별 물동량을 고려하여 항만 급지 구분과 검수사업 등록기준 인원 재조정 ① 등록기준 재검토 용역시행 (~'23.12월) ②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개정 ('24.3월)</td></tr><tr><td>효과</td><td>검수시장 질서가 안정화되어 검수 물량을 적기 소화하여 수출입 물류비 감축</td></tr></table>	현행	해수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관계 국책 기관에서 일부분에만 활용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통관 관련 데이터도 일부 접근에 한계	개선	데이터를 국제 물류에 대한 분석·예측·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물류관련 대학, 관련 벤처기업·빅데이터 분석기관 등에 공유 ('23.3월 시행)	효과	정책 수립의 정확성 제고 및 예측 가능한 유용 정보의 제공	현행	선박 입출항시 제출하는 신고서류 입력 간소화로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항만 경쟁력 강화	개선	① 첨단 AI 활용 광학문서인식기술을 선박 탑승자 정보 입력업무에 도입 ('23.12월) ② 해운대리점에 '품목코드 자동기재(추천) 서비스'를 제공, 선사에는 '코드 검증 API'를 제공 ('23.6월)	효과	신고제출[정보입력] 노력시간 절약으로 항만 및 수출입 경쟁력 강화 기여	현행	여수·광양항 등 인접 항만의 경우 항만사정에 의해 접안 하역하다 항계밖 정박지에 정박 후 재입항시 세관과 출입국관리소는 다시 입출항신고를 해야하는 불편	개선	세관과 출입국관리소의 입출항 중복 신고 간소화 ① 관세청 내부규정 정비 시행 ('23.2월 시행) ② 법무부 내부규정 정비 시행 ('23.3월 시행)	효과	항만입출항 편의개선을 통한 불편해소 및 항만 경쟁력 강화 기여	현행	항로 개설시 계획수심이 확보되었으나 서해안의 특성상 일부 해역에서 계획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선박 입출항에 지장 초래	개선	① 비관리청 준설공사허가기간 단축(「항만법」제9조 개정, 20→14일) ('23.6월~) ②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주요 항로와 정박지 수심에 대한 정기적 기록 관리, 항만이용자 의견수렴 등) ('23.4월~) ③ 선박의 안전한 통항 수심 확보를 위해 적기 준설예산 확보 ('23.12월)	효과	대형선박의 항행 원활화로 수출입 물류비 감축	현행	검수업 등록기준이 항만 급지별로 차등을 두고 있으나 취급 물량 등 여건에 맞지 않는 상황	개선	항만별 물동량을 고려하여 항만 급지 구분과 검수사업 등록기준 인원 재조정 ① 등록기준 재검토 용역시행 (~'23.12월) ②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개정 ('24.3월)	효과	검수시장 질서가 안정화되어 검수 물량을 적기 소화하여 수출입 물류비 감축	
현행	해수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은 관계 국책 기관에서 일부분에만 활용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통관 관련 데이터도 일부 접근에 한계																															
개선	데이터를 국제 물류에 대한 분석·예측·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물류관련 대학, 관련 벤처기업·빅데이터 분석기관 등에 공유 ('23.3월 시행)																															
효과	정책 수립의 정확성 제고 및 예측 가능한 유용 정보의 제공																															
현행	선박 입출항시 제출하는 신고서류 입력 간소화로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항만 경쟁력 강화																															
개선	① 첨단 AI 활용 광학문서인식기술을 선박 탑승자 정보 입력업무에 도입 ('23.12월) ② 해운대리점에 '품목코드 자동기재(추천) 서비스'를 제공, 선사에는 '코드 검증 API'를 제공 ('23.6월)																															
효과	신고제출[정보입력] 노력시간 절약으로 항만 및 수출입 경쟁력 강화 기여																															
현행	여수·광양항 등 인접 항만의 경우 항만사정에 의해 접안 하역하다 항계밖 정박지에 정박 후 재입항시 세관과 출입국관리소는 다시 입출항신고를 해야하는 불편																															
개선	세관과 출입국관리소의 입출항 중복 신고 간소화 ① 관세청 내부규정 정비 시행 ('23.2월 시행) ② 법무부 내부규정 정비 시행 ('23.3월 시행)																															
효과	항만입출항 편의개선을 통한 불편해소 및 항만 경쟁력 강화 기여																															
현행	항로 개설시 계획수심이 확보되었으나 서해안의 특성상 일부 해역에서 계획수심이 확보되지 않아 선박 입출항에 지장 초래																															
개선	① 비관리청 준설공사허가기간 단축(「항만법」제9조 개정, 20→14일) ('23.6월~) ②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주요 항로와 정박지 수심에 대한 정기적 기록 관리, 항만이용자 의견수렴 등) ('23.4월~) ③ 선박의 안전한 통항 수심 확보를 위해 적기 준설예산 확보 ('23.12월)																															
효과	대형선박의 항행 원활화로 수출입 물류비 감축																															
현행	검수업 등록기준이 항만 급지별로 차등을 두고 있으나 취급 물량 등 여건에 맞지 않는 상황																															
개선	항만별 물동량을 고려하여 항만 급지 구분과 검수사업 등록기준 인원 재조정 ① 등록기준 재검토 용역시행 (~'23.12월) ②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개정 ('24.3월)																															
효과	검수시장 질서가 안정화되어 검수 물량을 적기 소화하여 수출입 물류비 감축																															

부처	내용	일시												
	✓ 대형선 입항을 고려한 양곡부두 배치 조정 (해수부) <table><tr><td>현행</td><td>항만별 접안능력 차이에 따라, 대형 양곡선은 평택·당진항 등 접안능력이 높은 양곡 부두에 1차 접안 후 군산항, 인천항 등에 2차 하역</td></tr><tr><td>개선</td><td>양곡 물동량 및 대형 양곡부두 필요성 재검토 ('23.12월)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전 관계기관 의견수렴, 물동량 전망, 전문기관 검토 등을 거쳐 대형 양곡부두 필요성 검토 - 평택 당진항, 인천항, 군산항 등 주요 항만에 대한 양곡수요 전망치, 운행사 여건, 접안능력·항로, 양곡선 전망, 체선율 등을 종합 고려</td></tr><tr><td>효과</td><td>양곡물류의 효율적 처리 및 관련 산업 활성화</td></tr></table>	현행	항만별 접안능력 차이에 따라, 대형 양곡선은 평택·당진항 등 접안능력이 높은 양곡 부두에 1차 접안 후 군산항, 인천항 등에 2차 하역	개선	양곡 물동량 및 대형 양곡부두 필요성 재검토 ('23.12월)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전 관계기관 의견수렴, 물동량 전망, 전문기관 검토 등을 거쳐 대형 양곡부두 필요성 검토 - 평택 당진항, 인천항, 군산항 등 주요 항만에 대한 양곡수요 전망치, 운행사 여건, 접안능력·항로, 양곡선 전망, 체선율 등을 종합 고려	효과	양곡물류의 효율적 처리 및 관련 산업 활성화							
현행	항만별 접안능력 차이에 따라, 대형 양곡선은 평택·당진항 등 접안능력이 높은 양곡 부두에 1차 접안 후 군산항, 인천항 등에 2차 하역													
개선	양곡 물동량 및 대형 양곡부두 필요성 재검토 ('23.12월)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전 관계기관 의견수렴, 물동량 전망, 전문기관 검토 등을 거쳐 대형 양곡부두 필요성 검토 - 평택 당진항, 인천항, 군산항 등 주요 항만에 대한 양곡수요 전망치, 운행사 여건, 접안능력·항로, 양곡선 전망, 체선율 등을 종합 고려													
효과	양곡물류의 효율적 처리 및 관련 산업 활성화													
	• 세무조사 부담은 낮추고, 납세자 권익은 높이는 세무조사 혁신방안 발표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적법·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절차·적법과세 수준은 더 높이도록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세무조사 전반을 혁신함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❶ 사전통지 기간 확대, ❷ 현장조사 기간 축소, ❸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를 추진함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聽聞), 세무조사 내용을 적시에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告知) ❹ 「조사관리자 청문」과 ❺ 「조사결과 설명회」를 운영함 적법과세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기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❻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신설함 < 세무조사 행정혁신방안 > 혁신1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습니다.” <table><tr><td>사전통지 기간 확대</td><td>[기존] 15일 ⇨ [확대] 20일 (중소납세자)</td></tr><tr><td>현장조사 기간 축소</td><td>합리적 기준에 따라 현장조사 기간 감축 운영</td></tr><tr><td>자료제출 요구 합리화</td><td>비례원칙에 따른 최소한의 자료요구 기준 마련</td></tr></table> 혁신2 “충분히 경청하고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table><tr><td>조사관리자 청문</td><td>관리자(과장, 국장)가 납세자 의견 직접 경청</td></tr><tr><td>조사결과 설명회</td><td>조사내용, 과세근거, 권리구제절차 상세 설명</td></tr></table> 혁신3 “집단지성으로 적법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table><tr><td>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td><td>Red Team이 납세자를 대변, 과세쟁점을 숙의하는 조사국 내 적법성 검토 기구 신설</td></tr></table>	사전통지 기간 확대	[기존] 15일 ⇨ [확대] 20일 (중소납세자)	현장조사 기간 축소	합리적 기준에 따라 현장조사 기간 감축 운영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비례원칙에 따른 최소한의 자료요구 기준 마련	조사관리자 청문	관리자(과장, 국장)가 납세자 의견 직접 경청	조사결과 설명회	조사내용, 과세근거, 권리구제절차 상세 설명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Red Team이 납세자를 대변, 과세쟁점을 숙의하는 조사국 내 적법성 검토 기구 신설	2023-05-16
사전통지 기간 확대	[기존] 15일 ⇨ [확대] 20일 (중소납세자)													
현장조사 기간 축소	합리적 기준에 따라 현장조사 기간 감축 운영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비례원칙에 따른 최소한의 자료요구 기준 마련													
조사관리자 청문	관리자(과장, 국장)가 납세자 의견 직접 경청													
조사결과 설명회	조사내용, 과세근거, 권리구제절차 상세 설명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Red Team이 납세자를 대변, 과세쟁점을 숙의하는 조사국 내 적법성 검토 기구 신설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행정 안전부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5.16. 시행)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법률 제19024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으로 정하고, 새마을금고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10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대의원회의 대의원 수를 ‘3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6조의5 신설, 제24조제3항, 제60조제1항)	2023-05-15
산업통상 자원부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2023.11.17. 시행 예정)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하여 보도 통행의 허용 대상이 되는 로봇을 명확히 하고, 운영 안전인증을 실시함으로써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영을 담보하며, 보도 등에서의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3호 삭제, 제19조2 신설, 제20조부터 제29조까지 삭제, 제40조2부터 제40조4까지 신설 등)	2023-05-16
국토 교통부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5.16. 시행)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관련 사고 현황·이력 및 보험 정보 등을 포함하는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53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 이에 따라, 드론 정보체계에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안전성인증,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비행승인 및 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로 포함시켜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드론 정보체계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8조의2 신설, 제20조제1항)	2023-05-1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5.16. 시행) 건축물 간에 구조나 이용 목적 등의 유사성이 낮음에도 하나의 용도로 분류되었던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9045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 이에 따라,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도 그에 맞게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14조제5항제8호라목, 제46조제2항제7호 등)	2023-05-15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23.11.17. 시행 예정) 사업전환의 범위에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승인기업의 경우 사업전환절차 원활화를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거나,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등의 경우에 일괄 승인할 수 있는 공동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도입하고,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중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제2호다목 신설, 제5조 신설, 제6조제2항제1호, 제7조제2항제2호 등)	2023-05-16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2023.11.17. 시행 예정) 대규모의 투자 유치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1주마다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하거나 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복수의결권주식도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 가지도록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15조제1항, 제16조의11부터 제16조의16까지 신설, 제24조제1항제7호 신설, 제32조 신설, 제33조 신설 등)	2023-05-16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금융 위원회	• 「<u>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u>」 (2023.11.17. 시행 예정)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및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그에 맞추어 사기이용계좌 및 피해금의 정의를 확대하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의 범위에 출금의 지연과 일시정지를 포함하는 한편,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및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며,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제2조의2제4항 신설, 제2조의5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 등)	2023-05-16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추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새로 추가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구체적 사업화 시설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로서 새로 추가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구체적인 사업화 시설 범위를 규정 (안 제7조제10항제4호가목) ※ 의견 제시기간 : 2023/5/15(월)~5/26(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로 제출	2023-05-15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빌리티(Mobility)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그간 획일적 노선·시간의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성의 극대화가 강조되고 있음 특히, 자율차, UAM 등 미래 서비스 등장과 더불어 기존 산업이 혁신기술을 만나 자동화, 플랫폼화 되면서 기존 교통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모빌리티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며,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381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첨단 모빌리티 현황조사 방법,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규제확인 및 실증특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23-05-1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방법 및 결과 공표 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2조)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방법 및 절차, 평가 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3조) ③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기간을 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센터 지정 대상 기관 및 수행 업무를 정함 (안 제4조) ④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요청 시 제출 서류와 공표 방법을 규정함 (안 제5조) ⑤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과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방법·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⑥ 실증특례 책임보험 및 손해배상의 기준, 실증특례 연장 신청 및 법령정비 요청 절차 등에 관해 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 ⑦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내용, 시범사업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 ⑧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 회의 운영,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및 제13조) ⑨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항, 모빌리티지원센터 위탁업무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안 제14조부터 제16조) ※ 의견 제시기간 : 2023/5/18(목)~6/27(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로 제출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모빌리티(Mobility)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그간 획일적 노선·시간의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성의 극대화가 강조되고 있음 특히, 자율차, UAM 등 미래 서비스 등장과 더불어 기존 산업이 혁신기술을 만나 자동화, 플랫폼화 되면서 기존 교통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모빌리티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에,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며,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2023-05-1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절차 및 지정취소 방법 등을 규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②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실증특례 연장신청 방법을 정함 (안 제4조부터 제6조) ③ 법률에서 위임한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④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대상, 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8조) ※ 의견 제시기간 : 2023/5/18(목)~6/27(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로 제출	
금융위원회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19259호)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 절차 및 기한 (안 제18조 제3항, 제4항, 제5항) - 조합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하거나 1년 이내 공개경쟁입찰 등으로 매각하여야 하며, 입찰이 유찰 또는 보류되는 경우 등에는 매각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음 * 동 개정조항은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0조의 내용이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되도록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현행 감독규정과 동일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5/17(수)~6/26(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재활용과)로 제출	2023-05-17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적법한 동의방법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고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2023-05-1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달리 규율하고 있는 수집 출처 통지, 이용·제공내역 통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 기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국외 이전을 위한 요건 등을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원화하고, 영상정보의 특성을 반영하여 고정형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기준을 보완하여 정비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 계속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확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공개, 주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집 출처 통지 (안 제15조의2)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 (안 제15조의3) 기준 정비 -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와 이용·제공 내역 통지가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의 무대상을 수집 출처 등 통지 기준과 일치시키고 통지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② 동의를 받는 방법의 원칙(영안 제17조제1항)과 추가적인 이용·제공 요건 정비 (안 제14조의2제2항) - 정보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방법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예상이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도록 보완함 ③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안 제17조의2) - 일반규정 (종전 영 제17조제4항)과 특례규정 (종전 영 제48의3)으로 분산되어 있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일반규정으로 통합하여 정비함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규정 개선 (안 제22조제1항)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 등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함 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예외 (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 재난,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에 의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 등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함 ⑥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및 중지 명령 (안 제29조의7 ~ 제29조의13) - 국외 이전의 요건에 국가·국제기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과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인증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국외이전전문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국외 이전 중지명령의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 ⑦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안 제30조) - 일반규정(종전 영 제30조)과 특례규정(종전 영 제48조의2)으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규정을 통합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안전조치 분야에서의 기술발전의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기술 중립성 원칙을 반영하여 보완함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⑧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특례 (안 제30조의2) - 주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별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내부관리계획에 포함하고 접근 권한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며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접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함 ⑧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특례 (안 제30조의2) - 주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별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내부관리계획에 포함하고 접근 권한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며 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접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함 ⑨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안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 법 제30조의2 신설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 및 개선권고가 도입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⑩ 국내대리인의 지정 (안 제32조의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만 적용되던 국내대리인의 지정 규정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됨에 따라 지정 의무의 대상자 범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는 등 개정 법률에 맞게 조정함 ⑪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안 제33조) - 법(제32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회의참석 수당 지급, 저장·기록하지 않을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등으로 구체화함 ⑫ 공공기관 영향평가 지정기준 정비 (안 제35조 ~ 제38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할 시점을 개인정보파일을 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으로 명확히 하고,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서를 요약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⑬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안 제39조 및 제40조) -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이원화되어 있는 보호위원회·전문기관에 신고 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 ⑭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 (안 제51조의2 ~ 제51조의5) -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 분쟁 당사자가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의 수락 간주 등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사실조사 원칙 및 절차, 수락 간주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 방법 및 통지 방법 등 세부적인 절차 규정을 정비함 ⑮ 과징금의 부과기준 (안 제60조의2 ~ 제60조의4, 별표 1의5) -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매출액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의 범위를 ‘명백히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등’으로 구체화하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1의5의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를 구체화함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⑩ 결과의 공표 및 공표명령 (안 제61조) - 법률에서 공표명령이 신설됨에 따라 공표명령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⑪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 제63조, 별표 2) - 과태료에 대해 면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고려사항을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비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5/19(금)~6/28(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제출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의 원 등 16인)」 현행법령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시·도지사에 대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이 낮아 영세한 대부업자가 난립하고 금융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3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하여 금융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5제1항제1호)	2023-05-15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소비자안전센터에 대하여 물품 등의 위해성이 판명되어 공표되기 전까지 사업자명·상품명·피해정도·사건경위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의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이에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해물품 등을 관장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물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2조)	2023-05-16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정한 감사인 또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에 의한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법인 등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외부 감사대상 회사	2023-05-1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가 연속하여 6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피감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감사인 적격성 및 감사 품질의 저하, 감사 비용 상승 등의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며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외부 감사대상 회사로 하여금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함으로써 외부 감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3항 신설 및 제11조제2항·제3항 삭제 등)	
	•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u>」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공개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함)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자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40.6%(2020년도 기준 총 64명 중 26명)에 이르고, 재범률의 경우 2019년 15.4%(총 110명 중 17명), 2020년 28.5%(총 98명 중 28명), 2021년 21.2%(총 99명 중 21명)로 각각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하면서 캐나다·홍콩·독일·영국과 같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65조의21 및 제415조의2 신설, 안 제443조)	2023-05-1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통합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는 그 외의 투자에 비하여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 중에서도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신성장·원천기술에 비해서도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고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받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 관련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서 토지가 제외되어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관련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지를 포함시켜 바이오산업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안 제24조)	2023-05-15
농림축산 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에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자를 매립면허취득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이나 건설사업으로 발생하는 석탄재 또는 준설토 등의 부산물을 사용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행위 그 자체로서 매립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매립면허취득자가 매립으로 인해 생성된 매립지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것은 이중 혜택이며 그 과정에서 공유재인 공유수면의 사유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석탄재나 준설토 매립으로 생성된 매립지는 생활터전에 해당하는 해양환경의 파괴 및 어업활동의 축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감내한 지역 주민의 희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해당 매립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석탄재 또는 준설토 등을 사용하여 생성된 매립지는 그 소유권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킴으로써, 공유수면의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적·경제적 손실 보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호 단서 신설)	2023-05-17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생산을 위한 연구·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청의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장소별로는 일반·고속·기타 도로가 43건(54.4%), 충전 등을 위하여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가 29건(36.7%)으로 주차 중에 발생하는 화재 비율이 높아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의 환경친화자동차 또는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조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조사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화재를 예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1조의2제13항 신설 등)	2023-05-15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7인)」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에게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임 대다수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스톡옵션을 제시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543개 기업이 9,189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상법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방식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규정임에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여 방식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6조의3)	2023-05-18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간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개선 요구, 시정명령을 하며, 해당 위탁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개선 요구, 시정명령 또는 공표(이하 “시정명령등”이라 함)의 시효가 없어 직권조사를 받은 해당 위탁기업은 시정명령등을 받을 불리한 지위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아 경영상 애로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요구, 시정명령, 공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수탁·위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27조의2 신설)	2023-05-19
보건복지위원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1인)」 최근 30여년 가까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적발됨에 따라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 행세를 하며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면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4조의4 신설)	2023-05-18
환경노동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기업의 책무 중 하나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해 발생 시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점, 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보고	2023-05-1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하는 경우 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 및 무엇보다 재해자의 권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맞추어 향후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기에는 해당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이 즉각적으로 요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재해에 관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재해에 대해서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의 의견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안 제57조제3항)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공제조합 가입, 분담금 납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폐기물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국내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150만톤이며, 그 중 방치폐기물이 98.8만톤(66%)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방치폐기물의 성상을 확인해 보면 보통 재활용폐기물, 가연성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용보관량 이상 폐기물이 계속 쌓이는지에 대한 확인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함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실태 및 허용보관량의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도록 하여 폐기물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제13항 신설)	2023-05-1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현행법 상 ‘통상임금’은 휴업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고 있고, 현행법 외에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도 각종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다툼이 생기고 판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해 일부 사용자의 경우 지급하여야 할 수당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기본급 금액은 줄이고 대신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2023-05-1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제외되는 각종 후생복지비 및 상여금 등을 늘리는 방법으로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함으로써 ‘기본급 쪼개기’ 등의 관행을 방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각종 수당 또는 급여 지급 수준을 적절히 보장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토교통 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자동차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화재 등 자동차사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급발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자동차의 결함과 사고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적 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그 사고 원인을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그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사가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6항, 제31조의3제1항 및 제33조제3항제5호)	2023-05-18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 건축물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전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를 2단계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합·간소화할 필요가 있고, 인증 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 중 비교적 인증을 받기 쉬운 5등급으로 인증받고 있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23-05-1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에 통합하여 중복 절차로 인한 행정적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등급 이상을 받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하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는 한편, 실효성이 미흡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결과의 표시 제도를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호, 제6조의2,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31조, 제41조)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한정애의원 등 11인)」 1990년대 이후 택지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등을 통해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등이 제정되어 이를 규율하고 있으나, 동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사업주체가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사업 실시가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는「공공주택 특별법」은 건설·매입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정비에 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관계 및 개발여건에 따른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사업주체에 의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체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구성된 단지만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사업의 대상으로 삼음 (안 제2조) ② 사업주체가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정비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추진을 도모함 (안 제7조) ③ 사업 제안자를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해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사업주체를 지원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함 (안 제15조) ④ 공공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주택정비사업계획 승인 시의 통합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16조) ⑤ 공공주택정비사업 시 고밀도 개발 등을 허용하기 위하여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함 (안 제19조)	2023-05-1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⑥ 구역 내 기존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의 재정착을 위하여 협의양도시 현물보상을 실시함 (안 제28조) ⑦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신청,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및 임시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를 둠 (안 제30조 및 제32조)	
	• 「<u>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20인)</u>」 현행법은 역세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통합적 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이 일률적으로 사용·수용 방식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이 법에 따른 역세권개발이 시행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방식에 환지 또는 혼용 방식을 추가하고 「도시개발법」과 같이 순환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2023-05-19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5/25(목) 14:00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5/24(수)	금주의 서평 제629호 발간 -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	
	5/25(목) ~ 5/26(금)	제21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개최 - 디지털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도서관-데이터-플랫폼의 연결	소노캄 고양
	5/25(목)	「현안, 외국에선?」 제59호 발간 - 일본의 온라인진료: 관련 지침의 최근 개정내용과 추진 현황	
입법조사처	5/22(월) 14:00	입법조사처 자문기구 「국가비전 입법정책 포럼」 위촉식	조사처 부속회의실
	5/26(금) 10:00	지방소멸 대응 연구를 위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지방소멸 해법으로 이민정책 가능한가?	조사처 1세미나실

[별첨1] 제405회국회(임사회) 위원회 의사일정(안)

산자중기위	일시	구분	내용
운영위	5/24(수) 10:00	전체회의	-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장 선출의 건 - 국회·인권위·대통령비서실 등 소관 업무보고
법사위	5/22(월) 14:00	법안심사1소위	- 고유법 심사
	5/24(수) 10:00	법안심사2소위	- 타위법 심사
	5/25(목) 09:30	전체회의	- 고유법 의결, 타위법 심사
정무위	5/22(월) 10:00	전체회의	-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박민식 인사청문회 등
기재위	5/22(월) 10:00	전체회의	-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현안질의
교육위	5/26(금) 10:00	법안소위	- 법안 심사
외통위	5/24(수) 10:00	전체회의	- 국감결과보고서 채택, 법안 의결 - 외교부 등 소관 현안보고
행안위	5/22(월) 10:00	법안심사1소위	- 법안 심사
	5/22(월) 10:00	법안심사2소위	- 법안 심사
	5/24(수)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문체위	5/24(수) 14:00	문화예술소위	- 법안 심사
	5/25(목) 10:00	체육관광소위	- 법안 심사
산자중기위	5/24(수)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5/24(수) 14:00	산업특허소위	- 법안 심사
환노위	5/22(월) 10:00	환경법안소위	- 법안 심사
	5/23(화) 10:00	고용노동법안소위	- 법안 심사
	5/24(수)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및 상정
국토위	5/22(월) 08:00	국토법안소위	- 법안 심사
	5/24(수) 10:00	교통법안소위	- 법안 심사
정치개혁특위	5/22(월) 11:00	법안심사제1소위	- 법안 심사
	5/22(월) 17: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첨단전략 산업특위	5/25(목) 10:00	전체회의	- 법무부 등 업무보고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22(월) 10:0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과연 안전한가?	여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5/22(월) 14:00	국가 미래산업 그린바이오 성장방안 정책포럼	박덕흠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5/22(월) 14:00	수산분야 세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달곤·배준영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5/23(화) 10:00	에너지 수요 분산 정책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 - 지방소멸방지·국가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한무경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의원회관 2세미나실
5/24(수) 14:00	초거대 AI와 메타버스 산업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산업의 미래	노용호 의원실, 강원도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
5/24(수) 14:00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의대 설립 국회 정책 토론회	김정재· 김병욱(국)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5/24(수) 14:00	제2회 국회 건설인프라포럼 - 국가인프라 정책 선진화 및 거버넌스 체계 재정립 방안 마련	송석준·김정재·최인호 의원실, 대한토목학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5/25(목) 09:30	저출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 MZ세대 관점으로 본 진단 과 해법	김영선·이종성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5/25(목) 10:00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포럼 - 해양산업 상호 협력체계 구축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5/25(목) 10:00	지역MBC의 만성적자... 그 해법은 무엇인가?	박성중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실
5/25(목) 10:00	현행 국적법 문제와 해결책 - 국적자동상실제도를 중심으로	김홍걸 의원실	의원회관 5간담회실
5/25(목) 10:00	특별자치도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송재호·김한규·위성곤 의원실,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5/25(목) 14:00	한국 사회 마이크로바이옴 현황과 미래 전망	김두관·김승남 의원실, 한국마이크로바이옴협회 등	국회도서관 강당
5/26(금) 14:00	성평등을 향한 여정 - 여성차별금지과 성평등 실현의 역사와 과제	김영주·김홍걸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85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5/15(월)	「팩트북」 제101호 발간 - 저출산 대책	
	5/1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2호 발간 - 독일의 49유로 교통티켓 관련 입법례	
	5/17(수)	금주의 서평 제628호 발간 - 법, 문명의 지도 (떠난다 피리)	
	5/18(목)	「World&Law」 제2023-10호 발간 - 일상에 퍼지는 마약, 더 늦기 전에 막으려면?	
입법조사처	5/15(월)	「이슈와 논점」 2093호 발간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의 실효성 제고 방안	
	5/15(월)	「NARS Brief」 제1호 -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5/16(화)	「이슈와 논점」 2094호 발간 - 공직선거법상 통신관련 선거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5/17(수)	「이슈와 논점」 2095호 발간 - 뉴질랜드 의회 선거제도	
	5/18(목)	「이슈와 논점」 2096호 발간 - 강제동원피해자 관련 국회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	
	5/19(금)	「이슈와 논점」 2097호 발간 - 최근 5년간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과제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15(월) 13:30	<u>국방과학기술의 소유/관리에 관한 정책 세미나</u> - 국방과학기술의 활용과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방안	임병헌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5/15(월) 19:00	<u>시장의 실패, 정부실패 그리고 정부규제</u>	윤창현 의원실, 경제지식네트워크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5/16(화) 10:00	<u>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u>	정필모·윤영찬· 이정문·박완주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5/16(화) 10:00	<u>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u>	용혜인·이탄희 의원실, 알바연대 등	의원회관 2간담회실
5/16(화) 14:00	<u>2023 수산혁신포럼</u>	주철현 의원실, 수협중앙회, 수산신문	국회도서관 강당
5/17(수) 10:00	<u>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에 바란다</u> -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정경희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5/17(수) 10:00	<u>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 긴급토론회</u>	김태년·김경만· 김경협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5/18(목) 10:00	<u>NFT 시장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u>	김희곤 의원실, NFT 미래포럼	의원회관 2소회의실

5. 지난 주(5/15~5/21)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분야	내용
5/15(월)	금융	<u>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속칭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법’)이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u>
5/15(월)	에너지/자원	<u>주유취급소 내 연료전지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기준 개정 예고</u>
5/16(화)	지적재산권	<u>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인한 전망과 시사점</u>
5/16(화)	중국	<u>중국의 금융업에 대한 ESG의 도입과 전망</u>
5/17(수)	중국	<u>정부조달, 중국의 또 다른 시장</u>
5/17(수)	방송통신(TMT)	<u>우주항공청 설치 및 우주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u>
5/19(금)	건설/부동산	<u>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u>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